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

제3615호

2020.10.12.(월)



## 목 차

### ◆ 고 시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20-414호 |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 .....   | 2 |
| 제2020-415호 |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 ... | 3 |
| 제2020-416호 |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.....  | 7 |

## 고 시

#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14호

####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서울특별시장

#### □ 집회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0인 이상의 집회

－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

※ 2020.2.27.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85호 ‘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’는 별도 공표 시까지 유지됨.

나. 금지기간 :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별도 공표시 까지

다. 위반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)

라.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,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.

- ① 집회 참여자에 대한 체온 측정을 실시 할 것(37.5도 이상인 자는 참여 불가)
- ② 집회 주최자는 참여자 명부(연락처, 시군구명)를 작성하여 2개월간 보관할 것
- ③ 집회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계속 착용 할 것
- ④ 집회 장소내 2m 이상 거리두기를 이행 할 것
- ⑤ 집회가 종료되면 참여자는 즉시 해산할 것
- ⑥ 집회 참여인원이 100인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즉시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 할 것
- ⑦ 집회 주최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관청의 조치에 협조할 것

마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바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사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15호

###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(2020.10.12.)와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뷔페)과 150㎡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서울특별시

1. 기 간: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
2. 대 상
  -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뷔페
  - 서울시 소재 150㎡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
3. 내 용: 대상시설의 사업주·종사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  -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

| 사업주·종사자 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자 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의무 설치·이용<br>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br>②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<br>*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<br>*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br>③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br>④ 방역관리자 지정<br>⑤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<br>* 문 손잡이·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<br>⑥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<br>*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m 이상 거리 유지<br>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<br>⑧ 이용인원 제한(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<br>⑨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<br>(1시간 당 10분 또는 3시간 당 30분 휴식)<br>* 춤추는 시설(클럽, 감성주점, 콜라텍)은 의무, 그 외 시설(룸살롱 등 유흥주점, 헌팅포차, 단란주점)은 권고 | ①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인증<br>*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,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<br>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br>③ 마스크 착용(음식물 섭취 시 제외)<br>④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|

○ 뷔페 (결혼식장 뷔페 포함)

| 사업주·종사자 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자 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의무 설치·이용<br>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br>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br>② 출입자·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<br>*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br>③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br>④ 방역관리자 지정<br>⑤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br>⑥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<br>* 필요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<br>⑦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<br>⑧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<br>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<br>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<br>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| ①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인증<br>*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,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<br>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br>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br>③ 마스크 착용<br>(입장,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)<br>④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br>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|

○ 150㎡ 이상 음식점(일반·휴게) 및 제과점 (150㎡ 미만은 권고)

| 사업주·종사자 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자 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<br>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<br>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<br>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<br>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br>②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의무 설치·이용<br>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br>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br>③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br>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<br>④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br>⑤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| ①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<br>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<br>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<br>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<br>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br>②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인증<br>*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,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<br>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br>③ 마스크 착용<br>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|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-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(기본 2주)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
(10.13.시행 / 11.13.적용)

\* 시설 운영자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(10만원)
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(12.30.시행)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##### 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  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  - (제1항제2의2호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  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<시행 2020.12.30.>
  - (제4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·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    1.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
    2.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
  - (제5항)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 -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 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9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◆ **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16호**

**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**

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서울특별시장

1.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
  - 실내\*, 실외\*\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    -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      - \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      - \*\* 실외 :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3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~4호
4. 처분사유 :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,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5. 처분기간 : 2020. 10. 13.(화) ~ 별도명령 시 까지
  - ※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2020. 10. 13.(화) ~ 11. 12.(목)
6.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  - 가. 과태료 부과근거
  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  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  - 나. 과태료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  - 다. 단속내용 : 허가된 마스크\*로, 올바르게 착용했는지\*\*
    - \*허가된 마스크 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      - ※ 망사형 마스크, 벨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- \*\*올바르게 착용했는지 :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
  - 라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## 1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‘만 14세 미만자’ 및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’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## 2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
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## 마. 단속방법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- ※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## 바. 부과금액 :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## 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0. 13.(화) 0시 부터

## 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 
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## 10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## 11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,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기관의 장 |  |
| 선     |  |
| 람     |  |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